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85

발의연월일: 2021. 12. 2.

발 의 자:서영석·홍정민·강준현

박상혁・설 훈・최혜영

문진석 · 남인순 · 이정문

김상희 · 김성주 · 신현영

박홍근 • 이용호 • 윤준병

최연숙 • 변재일 • 인재근

김민기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및 각종 부담금 면제 조항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2년 3월 30일까지로 규 정하고 있음

신약개발 중심의 제약·바이오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 구개발 비중이 높은 기업 등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음.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각종 특례 조항이 일몰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의 부담 증가로 혁신성과 도출을 위한 투자 위축 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일몰기한의 연장이 필요함(안 법률 제10519호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19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중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를 "2032년 3월 30일까지 효 력을 갖는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0519호 제약산업 육성	법률 제10519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16조 및 제17조는	제2조(유효기간) 제16조 및 제17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2032년 3월 30일까지 효력을 갖
<u> 가진다</u> .	<u>는다</u> .